#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이낙연·강득구·권칠승

권인숙 · 김종민 · 김철민

김진애 · 김진표 · 김경만

김영배 · 기동민 · 고영인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민홍철 • 박광온 • 박주민

박 정・박완주・박성준

박재호 • 박홍근 • 변재일

백혜련 · 신현영 · 신정훈

소병철 · 안규백 · 이상직

이규민 • 이상민 • 이수진(비)

이용빈 · 이학영 · 이탄희

오영훈 · 양경숙 · 양양영

윤관석 • 우원식 • 윤미향

윤영찬 · 임종성 · 전재수

전해철 · 전용기 · 전혜숙

조정식 · 진성준 · 정춘숙

최종유 · 최인호 · 천준호

허 영·한준호·홍성국

의원(5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77조의2).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정을"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를 "따른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지원"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1.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③ 제1항에 따른 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7383호 재난 및 안전관 법률 제17383호 재난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안정 및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 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 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4. -----<u>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u> <u>따른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u>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 9. (생략)

④ ~ ⑦ (생 략)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생략)

<u><신</u>설>

<신 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지원

5.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 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문 지 아니한다.

- 1.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 원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 원
- ③ 제1항에 따른 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이른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 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위와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
<u>니할 수 있다</u>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